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34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정춘생・이해민・박은정
황운하・서왕진・김태선
김선민・김 윤・임미애
신장식・백선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준·범위,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방법------- ---------- ---------- --.